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www.mogef.go.kr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가 궁금하신가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또는 가족센터로 전화주시면
다양한 지원정책을 안내해드립니다.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내선 2번)

365일 8시~22시

가족센터

☎1577-9337

위치기반 가까운 가족센터 연결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www.mogef.go.kr

한부모가족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주세요

1.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상담 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해주세요.
2.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해서 상담해주세요.
 - 상담실이 없을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낮춰서 응대해주세요.
3.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은 삼가 해주세요.
 - “아이 아빠는 없어요?”, “어쩌다 혼자가 됐어요?” 등의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4.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반말을 사용하지 말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주세요.
 - “네가 엄마야?”, “낳을지 말지 잘 생각 했었어야지.” 등의 표현은 하지 말아주세요.
5. “안돼요, 모르겠는데요.”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6.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 후원물품 수령 등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7.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에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세요.
8. 임신·출산부터 양육까지 전과정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 지자체의 자녀 양육지원 제도,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아동양육비 및 미혼모부자 가족복지시설 등에 대해 안내해주세요.
 - 출생신고가 안 된 자녀를 둔 미혼부에게는 자녀의 출생신고 완료 전에도 받을 수 있는 지원(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아동수당,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건강보험 등)에 대해 꼭 알려주세요.
9. 임신, 출산, 양육상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긴급복지지원 등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알려주세요.
10.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교부해주세요.
 - 실물 책자·리플릿이 없는 경우,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01 임산·출산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09
- 산모건강관리 09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09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0
- 출산비용 지원 10
-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10
- 출산지원시설 11
-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11

02 양육·돌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15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16
- 긴급복지지원 16
-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16
-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17
- 온가족보듬사업 17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7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8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8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8
- 아동수당 18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19
- 보육료 지원 19
- 가정양육수당 지원 20
- 부모급여(영아 수당) 지원 20
-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21
- 아이돌봄서비스 21
- 지역아동센터 지원 22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22
- 가사·간병 방문 지원 22
- 통합사례관리 23
- 육아종합지원센터 23
- 공동육아나눔터 23
- 늘봄학교 23

03 시설·주거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27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27
- 공공주택 지원 28

04
교육·취업

-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31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31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32
- 자녀 교육비 지원 32
-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32
-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33
- 국민취업지원제도 33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33

05
금융·법률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37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37
- 근로장려금 38
- 자녀장려금 38
- 미소금융 39
- 소액보험 40
- 희망저축계좌 I 41
- 희망저축계좌 II 41
- 청년내일저축계좌 41

06
기 타

- 요금감면 혜택 45
- 스포츠 강좌 이용권 46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46
- 4대공·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46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47
- 출생신고 완료전 미혼부 자녀 지원 48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49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관련 용어 50
- 법률지원 51
- 제재조치 51
- 추심지원 52
- 상담지원 52
- 모니터링 53
- 면접교섭 53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54

01

임신·출산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부 및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임신부터 출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가 궁금하신가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또는 가족센터로 전화주시면
다양한 지원정책을 안내해드립니다.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내선 2번)

365일 8시~22시

가족센터

☎1577-9337

위치기반 가까운 가족센터 연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포함)
- **지원내용**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 * 임신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
 -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경우 20만 원 추가지급
 - 카드 수령후 분만예정(출산일, 유산일, 사산일)일로부터 2년까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신청문의**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 원 이내 추가 지원
 - **신청문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단축번호4), www.socialservice.or.kr/)
- **신청문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은행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산모건강관리

-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지원내용** 산전혈액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신부 배려 엠블럼 제공,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임신부의 건강 보호
- **지원내용**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신부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 질환	지원기간
조기진통(O60), 양막의 조기파열(O42)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분만관련 출혈(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O45), 전치태반(O44, O69.4), 절박유산(O20.0), 양수과다증(O40), 양수과소증(O41.0)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전출혈(O46), 자궁경부무력증(O34.3), 고혈압(O10, O13, O16), 다태임신(O30, O31), 당뇨병(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자궁내 성장제한(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O코드 질환을 동반한 신질환(N00~N23) 및 심부전(I00~I52)	입원치료 전 기간

- **지원내용**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
- **지원내용**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예정)가정
※ 미혼모 등 지자체별 예외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확인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신청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출산한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출산비용 지급
-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 아이 1인당 70만 원
-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 1인당 100만 원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시·군·구청/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아이 1인당 25만 원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신부 및 2세 미만 영아 가정
- **지원내용**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정서적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산모우울 등 고위험 가구는 2세까지 지속적인 건강 상담과 심리·사회적지지 등을 통해 생애 초기 적극적 건강관리 지원
-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사업실시 보건소*,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사업 실시 보건소(59개 보건소, '23.12월)]

- 서울(강북구, 서초구, 강남구, 은평구), 부산(연제구, 동래구, 북구, 영도구), 대구(북구), 울산(중구, 남구, 동구, 북구), 인천(남동구), 세종, 경기(성남시 분당구, 구리시, 군포시, 안성시, 과천시, 양평군), 강원(속초시), 충북(청주시 상당구), 충남(아산시, 공주시, 금산군), 전북(김제시), 전남(해남군, 화순군, 순천시, 장흥군, 신안군, 광양시, 담양군, 고흥군, 강진군, 장성군, 진도군), 경북(포항남구, 포항북구, 성주군, 영천시, 문경시, 영덕군, 울진군, 청도군, 구미시, 안동시), 경남(창원통합, 김해시,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합천군, 창녕군), 제주(서귀포서부)

출산지원시설

- **지원대상**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의 양육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
※ 24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입소가능
- **지원내용** 숙식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지역	시설명	전화번호	지역	시설명	전화번호	
서울	구세군두리홈	02-363-4471	대전	대전자모원	042-934-6934	
	애란원	02-393-4725	울산	미혼모의집물푸레	052-903-9200	
	마음자리	02-2691-4365	경기	생명의집	031-334-7168	
	마포애란원	02-711-4725		새싹들의집	031-457-4383	
	도담하우스	02-449-8893		광명아우름	1600-0152	
	부산	바인센터	02-2671-0693	강원	마리아의집	033-262-4617
		애란세움터(비양육모)	02-703-4406	충남	구세군아름드리	041-568-0691
마리아모성원		051-253-7543	전북	기쁨의하우스	063-853-9616	
대구	성현원	051-545-9272	전남	성모의집	061-279-8004	
	가톨릭푸름터	053-764-8537	경북	누리영타운	054-772-5440	
인천	인천자모원	032-772-0071	경남	생명터미혼모자의집	055-231-0582	
광주	엔젤하우스	062-651-8585	제주	애서원	064-773-2010	
				헬로우아지트(비양육모)	064-773-2010	

※ 출산지원시설 이외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주거지원' 부분 참고

- **입소문의** 해당 시설 및 지자체(시·군·구청)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www.mogef.go.kr>)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지원내용**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간 사용가능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
- **사용처** 유흥·사행 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02

양육·돌봄

아이들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가 궁금하신가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또는 가족센터로 전화주시면
다양한 지원정책을 안내해드립니다.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내선 2번)

365일 8시~22시

가족센터

☎1577-9337

위치기반 가까운 가족센터 연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고등학교 재학(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 + 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지원기준**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단위: 원/월)

구 분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1만 원
 - * 고등학교 재학(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 고등학교 재학(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 아동교육 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부정수급 신고 협조요청]

- **신고대상** 소득재산 축소신고, 동거 및 위장이혼 등 사실혼 관계, 혼인관계 변동사항 미신고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받은 자
-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 신고, 해당 지역 시·군·구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부서 또는 통합조사팀
- **신고문의**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번)
- **조치사항**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조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제4항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 지원내용** 2024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단위: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중위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 (0~1세 영아) 1인당 월 40만 원
 - *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 자립촉진 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긴급복지지원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지원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3인 기준 3,535,992원 이하)
(재산) 대도시(특례시 포함)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
(금융재산) 1인 가구 822만 원, 4인 가구 1,172만 원(단, 주거지원은 해당금액에서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
- 지원내용**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 지원대상** 저소득 사회취약계층 및 환경성질환자(아토피, 천식 등) 거주 가구
- 지원내용** 실내 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환경성 질환자 진료 서비스 지원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및 환경부에 추천
- 신청문의** 시·도 및 시·군·구 환경정책과(또는 환경업무 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 1820)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의료급여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주거급여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교육급여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 **지원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급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생계·의료급여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주거급여 문의 :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문의 : 교육급여콜센터(☎02-6222-6060)

이 외,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실직, 임신·출산 등)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문의바랍니다.

온가족보듬사업

- **지원대상**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및 긴급위기가족 등
- **지원내용** 상담, 사례관리, (손)자녀대상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서비스, 출산·양육지원 등 제공* 및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가족돌봄, 긴급심리·정서지원 및 서비스 연계 제공
 *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본인도 학습·정서지원 가능하며, 상담·법률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 **신청문의** 가족센터 대표번호(☎1577-9337, www.familynet.or.kr)
 가족상담전화(☎1644-662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지원내용**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구 분	미 숙 아				선천성 이상아
	(출생시 체중) 2.0~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2.0kg 미만	1~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 한도	3백만 원	4백만 원	7백만 원	1천만 원	5백만 원

- **신청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지원대상**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 **지원내용** (검사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의 경우, 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환아관리)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신청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검사비)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보청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보청기 지원
- **신청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지원내용** 기저귀(월 9만 원) 및 조제분유(월 11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입양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신청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아동수당

- **지원대상** 0~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
- **지원내용**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최대 96개월 간 지급)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 **지원대상**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지원내용**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한부모가족*가정 유아는 월 최대 200,000원 추가 학비 지원(시·도 교육청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반 아동(소득수준 무관)
 -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1순위 항목당 100점, 맞벌이 및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 1순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2.9. 시행), 맞벌이인 경우(한부모가 취업 및 구직 중인 경우 포함) 등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등
- **지원내용** 나이에 따라 월 28~54만 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어린이집 보육료)
 - * 기본보육(09:00~16:00) 기준 (단위: 원/월)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540,000	475,000	394,000	280,000	280,000	280,000

 -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 *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연장보육시간(16:00~19:30)을 경과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야간 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연장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 '20년 3월 1일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어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되어 시행합니다.(0~2세반 영아의 경우 연장보육을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필요)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기관 포함)·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내용**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

연령	금액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시간제보육 지원]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현금)를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는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아이사랑 모바일 앱(app) 또는 전화(☎1661-9361)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 지원대상** 0~1세 아동
- 지원내용**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중 택1
 * 부모급여(영아수당),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서비스간 변경 가능)
- 지원금액**

부모급여(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100만원(0세), 50만원(1세)	이용권(바우처)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원

 * 바우처(보육료,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 지급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 드림스타트

- 지원대상**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기본대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정 등
 * (특화대상) 농산어촌 기초단체(82개)의 법정한부모 외 사회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
- 지원내용** 아동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지원 영역별 서비스 제공
 * 아동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기초학력 검사, 언어치료, 독서지도,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소방 및 안전 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 임산부 :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
 * 부모 :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www.dreamstart.go.kr, ☎02-6454-8500)

아이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
 * 종일제 돌봄 :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에게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시간제 돌봄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제공, 등·하원(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시간제 (0~12세, 시간당 11,630원)				영아종일제 (시간당 11,630원)	
		취학 전		취학 후		0~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1,744원	8,723원	2,907원	9,886원	1,744원
나형	120% 이하	6,978원	4,652원	3,489원	8,141원	6,978원	4,652원
다형	150% 이하	2,326원	9,304원	1,745원	9,885원	2,326원	9,304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	-	11,630원	-	11,630원

- * 휴일 및 야간(22시~익일 06시) 이용요금의 50% 가산
- * 가형(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가정은 5% 추가 정부지원
- * 가형~다형 다자녀 가구 본인부담금 10% 할인, 청소년(한)부모 0~1세 가구 90% 지원

- 신청문의** **[정부 지원 가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신청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신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이외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과후 늘봄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 **지원대상** 방과후 마을돌봄이 필요한 한부모·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등의 18세 미만의 아동
- **지원내용**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연계)
- **신청문의** 지역아동센터 소재 시·군·구 / 정부24(www.gov.kr)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9~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월 13,000원, 연 최대 156,000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매
- **신청문의** 지역아동센터 소재 시·군·구 / 정부24(www.gov.kr)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국민행복카드사별 사용처 >

카드사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GS더프레시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편의점, PK마켓, 부츠(boots)
롯데카드	롯데카드 핑샵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롯데마트, VIC마켓,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편의점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올댓쇼핑,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CU편의점
신한카드	KB국민몰,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CU편의점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질병과 생활고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 **지원내용**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가사·간병 서비스 이용 가능한 바우처 이용권 지급
 *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하며, 차액은 본인부담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통합사례관리

- **지원대상**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로 발굴된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보건·복지 등 공공 및 민간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가구
- **지원내용**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대상가구에 생활지원비 및 진단비, 교육 훈련비 등 일부 지원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원대상**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 **지원내용** 공통부모교육, 부모상담 및 양육지원정보 제공, 장난감·도서대여, 놀이실 운영 등
- **신청문의** 육아종합지원센터(☎02-1661-5666 ☎02-701-0431, central.childcare.go.kr)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공동육아나눔터

- **지원대상** 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
- **지원내용** 돌봄 품앗이를 구성하여 이웃 간 양육정보 교류, 나눔기회 제공, 참여자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자녀 성장발달 활동을 돕는 놀이, 문화·체험 활동 등 그룹 돌봄 활동 지원
*운영시간 : 평일 10:00~18:00 / 지역에 따라 야간, 주말, 방학기간 등 확대 운영
- **신청문의** 가족센터(지역별 공동육아나눔터) (☎1577-9337)

늘봄학교

- **지원대상**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 ('24) 초1 → ('25) 초1~2 → ('26) 모든 초등학교
- **지원내용** 학년별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늘봄학교는 '24.2학기부터 전체 초등학교 운영 예정으로 '24.1학기에는 기존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 **신청문의** 자녀 재학(입학 예정) 초등학교, 교육청 / 교육부 민원콜센터(☎02-6222-6060)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03

시설·주거

한부모·조손가족이 따뜻한 집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가 궁금하신가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또는 가족센터로 전화주시면
다양한 지원정책을 안내해드립니다.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내선 2번)

365일 8시~22시

가족센터

☎1577-9337

위치기반 가까운 가족센터 연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모·부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 **지원내용**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및 자립준비금 인정

시설 유형	입소대상 및 기능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출산지원시설	임신한 한부모와 출산 후(1년 이내) 한부모 및 그 자녀(3세 미만)에게 건강관리,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 집중 지원	1년 6월 (6월)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2년(1년)
양육지원시설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에게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 집중 지원	3년(1년)
생활지원시설	18세 미만 ¹⁾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와 자립을 지원	5년(2년)
일시지원시설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한부모가족	6월(1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이용시설

1)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

- **신청문의** 시·군·구청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www.mogef.go.kr>)

시설 입소자의 경우, 자립준비금 공제제도(시설 입소자의 근로의욕 제고 및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소득의 4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자립준비금'으로 인정하여 소득 향상으로 인한 퇴소를 유예)를 통하여 자립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지원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자립 지원(6년 이내, 2년마다 자격심사하여 연장 여부 결정)

지역	시설명	전화번호	지역	시설명	전화번호
서울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02-363-5722	강원	원주시가족센터	033-765-8314
	한국미혼모네트워크	02-734-5007	충북	새생명지원센터	070-7725-6909
부산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051-330-3426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대구서구가족센터	053-355-8042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	인천남동구가족센터	032-773-0297	경북	포항시가족센터	054-244-9701
광주	광주동구가족센터	062-234-6053		경남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	홀트아동복지회(아침뜰)	042-585-3004	제주		사회복지법인 청수
	경기	홀트아동복지회(고운뜰)		031-216-9081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033			

- **신청문의** 시·군·구청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지원

- 지원대상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주택 유형별 한부모가족 순위

주택 유형		순위 및 내용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나이가 2세 이하일 경우 우선공급 • 자녀 나이가 3세 이상 6세 이하일 경우 잔여공급 	
공공임대	영구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일반공급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민임대·장기전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	
	행복주택	신혼부부, 한부모 계층 물량 내에서 추첨*(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 산업단지근로자 자격충족 시 1순위, 미충족 시 추첨)	
	통합공공임대*	신혼부부 일반·우선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매입 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년 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일반 한부모가족, 6세 이하)
		다자녀 매입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조손가정 포함
	전세 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년 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일반 한부모가족, 6세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조손가정 포함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말함

- 신청문의 시·군·구청 / 시·도 도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www.lh.or.kr)

04

교육·취업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자립하고자 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교육 및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가 궁금하신가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또는 가족센터로 전화주시면
다양한 지원정책을 안내해드립니다.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내선 2번)

365일 8시~22시

가족센터

☎ **1577-9337**

위치기반 가까운 가족센터 연결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지원대상**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 원적교의 학적을 유지한 채 전국 어디서든 위탁 교육 가능

<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현황 >

지역	시설명	전화번호	지역	시설명	전화번호
서울	나래희망학교	02-393-4720	강원	마리아의집	033-264-0194
부산	마리학교	051-253-7543	충북	청주해오름마을	043-285-4438
대구, 경북	가톨릭푸르터	053-764-8537		충남	구세군아름드리
인천	인천자모원	032-772-0071			천안새소망의집
광주	엔젤하우스	062-651-8585	전북	민들레학교	063-283-1356
대전, 세종	대전자모원	042-934-6934	전남	성모의집	061-279-8004
울산	미혼모의집물푸레	052-903-9200	경남	범속학교	055-298-1127
경기	아우름 대안학교	02-1600-0152	제주	사회복지법인청수(애서원)	064-773-2010
	나래대안학교	02-393-4720			

- **신청문의** 해당기관, 시·도교육청 대안교육 담당자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www.mogef.go.kr>)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지원대상** 혼인·임신·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희망 여성, 재직여성 등
- **지원내용**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창업 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 직업상담 개인별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정보 제공
 - 직업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 취업역량교육
 - 취업연계 전공, 경력, 역량 등을 토대로 취업알선, 동행면접, 인턴십 지원
 - 여성창업 창업정보 제공, 창업상담 및 교육훈련 지원
 - 사후관리지원 직장적응, 고충상담 등 지원,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조성 등
- **신청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상담 (☎1544-1199)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saeil.mogef.go.kr>)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지원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중등 3학년)
- **지원내용** 급식, 보충학습, 상담 및 다양한 체험활동(문화예술, 체육, 과학, 진로개발,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 등) 운영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31~4)
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www.youth.go.kr/yaca/index.do)

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지원대상**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대 및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 이거나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9~18세)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자녀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정서·행동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디딤과정(4개월), 오름과정(1개월), 단기과정(11박 12일) 제공
상담·치료(정신의학적 상담), 보호(거주형 보호시설), 교육(검정고시 지원), 자립지도(직업교육, 체험활동 등) 지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교육청, 학교, 가족센터 등 기관 및 개인 신청 가능
- **신청문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031-333-1900, www.nyhc.or.kr)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053-665-6914, www.youthfly.or.kr)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 지원내용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장학금	국가 장학금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	대학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원 (연 350만 원~등록금 전액)
	국가근로 장학금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학부생	근로시간에 따른 장학금 지원 (시급단가: 교내 9,860원, 교외 12,220원)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부생 및 대학원생(소득요건 有)	대출금리 1.7%('24.1학기 기준, 변동금리) 등록금대출(한도 내 실소요액) 생활비대출(학기당 200만 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출금리 1.7%('24.1학기 기준, 고정금리) 등록금대출(한도 내 실소요액) 생활비대출(학기당 200만 원)

※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1599-2000)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대상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15~69세 이하의 저소득층, 미혼모, 한부모 등
- 지원내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유형으로 지원
 - (공통) 1년간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I 유형)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 추가 6개월간 지원
 - * 18세 이하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 (II 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참여 등에 따라 취업활동비용 지원
- 신청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www.work24.go.kr)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인 근로자로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 원),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지급

기 준	지 급 액
첫 3개월	100% (상한 250만 원)
4~12개월	80% (상한 150만 원)

- 신청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05

금융·법률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
이제 법 전문가가 대신해 드립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가 궁금하신가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또는 가족센터로 전화주시면
다양한 지원정책을 안내해드립니다.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내선 2번)

365일 8시~22시

가족센터

☎1577-9337

위치기반 가까운 가족센터 연결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 **지원내용**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추심 및 모니터링 지원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윈스톱 종합 서비스 제공
- **신청문의**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양육비 상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못해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9개월 간(최장 1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한부모가족
 *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부,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 절차 지원 가능
-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에게 민·가사 사건, 형사 사건 등 법적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등)를 통해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 지원
- **신청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 지원 포함

근로장려금(2024년 신청)

- **지원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자격요건** (재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소득)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지원내용**

구 분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12월 2일까지
- **신청방법** 전자신청(ARS전화 1544-9944, 모바일 손택스앱,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신청

자녀장려금(2024년 신청)

- **지원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2023.12.31. 현재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자격요건** (재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소득)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
- **지원내용**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12월 2일까지
- **신청방법** 전자신청전자신청(ARS전화 1544-9944, 모바일 손택스앱,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신청

미소금융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또는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창업 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
- **지원내용**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구분	대출한도	대출기간 (거치기간 제외)	금리
창업자금	7천만 원	5년 이내	2~4.5%
운영자금	2천만 원	5년 이내	2~4.5%
시설개선자금	2천만 원	5년 이내	4.50%
취업성공대출	3백만 원	3년 이내	4.50%
긴급생계자금	1천만 원	4년 이내	4.50%
교육비지원대출	5백만 원	5년 이내	4.50%
취약계층 자립자금*	12백만 원	5년 이내	3.00%
취약계층교육비대출*	5백만 원	5년 이내	3.0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가구주 등

- **신청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누리집(www.kinfa.or.kr)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 지원대상**

[1기] (저소득층아동보험Ⅱ) 한부모가족의 만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보험기간 : 2020. 07. 31.~2022. 07. 30.)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2기] (한부모가정의료보험) 한부모가족의 만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보험기간 : 2022. 07. 31.~2024. 07. 30.)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 지원내용** 보험료 무료,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가입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1기	2기
부양자	상해 후유장해(3~100%)	3,000만 원	3,000만 원
	질병 후유장해(3~100%)	3,000만 원	3,000만 원
	대중교통상해 후유장해	3,000만 원	-
아동	상해 후유장해(3~100%)	3,000만 원	-
	질병 후유장해(3~100%)	3,000만 원	-
	대중교통상해 후유장해	3,000만 원	-
	입원일당(상해/질병), 출산제외	3만 원	7만 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7만 원	10만 원
	암진단비(재진단 제외)	1000만 원	500만 원
	수술비	10만 원	7만 원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30만 원	30만 원
	폭력피해 위로금	100만 원	100만 원
	식중독 입원일당, 입원 4일 이상시	10만 원	7만 원

- * 상세한 보장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소액보험 안내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하시어, 한부모가정의료보험의 "보험약관"과 "상품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20년 7월 31일"부터 발생한 상해와 질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부득이 사고 직후에 청구가 어려운 경우, 상해사고 또는 질병 발생 후로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보험금청구를 위한 양식과 필수서류 목록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의 소액보험 메뉴에서 "상품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한부모가정의료보험(☎02-3471-5116), 카카오톡 채널(서민금융진흥원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 누리집(www.kinfa.or.kr)

희망저축계좌 I

- **지원대상** 일반시장 및 자활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 **지원내용** 꾸준히 근로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매칭하여 적립
- **지원요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희망저축계좌 II

- **지원대상** 일반시장 및 자활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내용** 꾸준히 근로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 지원
- **지원요건**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신청 당시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창업 청년 *월 근로(사업) 소득 요건은 모집 시 별도 공지 예정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 **지원요건** 자립역량교육 이수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06

기 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가 궁금하신가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또는 가족센터로 전화주시면
다양한 지원정책을 안내해드립니다.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내선 2번)

365일 8시~22시

가족센터

☎1577-9337

위치기반 가까운 가족센터 연결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 내용	신청 및 문의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복지용 쌀 할인지원(기준가격의 약 60~90% 할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지역난방·전기·가스요금감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전기] 한국전력공사(☎123) [가스] 해당 지역 가스공급사 고객센터 산업통상자원부(☎1577-0900)
에너지효율개선 * (난방) 주거지의 단열, 창호 공사 및 보일러 보급 지원 (냉방) 에어컨 보급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에너지바우처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 포함 가구, 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복지로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이동전화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면제(월 2만 6,000원까지),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본료 면제(월 1만 1,000원까지),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1인당 1회선(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 대 4회선까지 감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전용 ARS(1523), 이동통신사 대리점
과태료 50% 이내 감면	해당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 법무부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한부모가족 80%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스포츠 강좌 이용권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의 5~18세 유·청소년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일정금액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누리집(svoucher.kspo.or.kr)에서 확인
-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
※ 대상자 선정 → 전용카드 발급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결제 후 강좌 수강
- **신청문의** 스포츠강좌이용권 (☎02-410-1298~9, svoucher.kspo.or.kr)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지원대상**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 13만 원)
-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온라인(www.mnuri.kr, 공식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 **신청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www.mnuri.kr), 모바일 앱([공식] 문화누리카드)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발급받은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시
- **지원내용**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 **제도문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 02-6540-3800
경복궁관리소 ☎ 02-3700-3900~1
창덕궁관리소 ☎ 02-3668-2300
덕수궁관리소 ☎ 02-771-9951~2
창경궁관리소 ☎ 02-762-4868
종묘관리소 ☎ 02-762-3551~2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031-885-3123~4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 031-563-2909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 02-972-0370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 02-359-0090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이렇게 하세요

1. 신청 절차

서류준비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다운로드 가능 (help.scourt.go.kr 민원안내 - 양식모음)
- 첨부자료
 - 친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 본인,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등
 -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
* 유전자 검사 자료 등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가정법원 제출 (등록기준지·주소지 관할)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첨부자료 제출

출생신고

- 가정법원의 확인서로 출생증명서 갈음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

2.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
- 지원내용 : 유전자 검사비 지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절차 법률상담 및 소송(신청)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
- 신청서류 : 신분증, 도장,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 증빙서류*,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신청 사건의 첨부자료(위 신청 절차 참고)
- * ① 가구원수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및 세대원포함)
② 건강보험가입여부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③ 기준중위소득 확인용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산정내역서 (건강보험미가입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문의전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ARS 2번 연결)

출생신고 완료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의 복지급여, 건강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서비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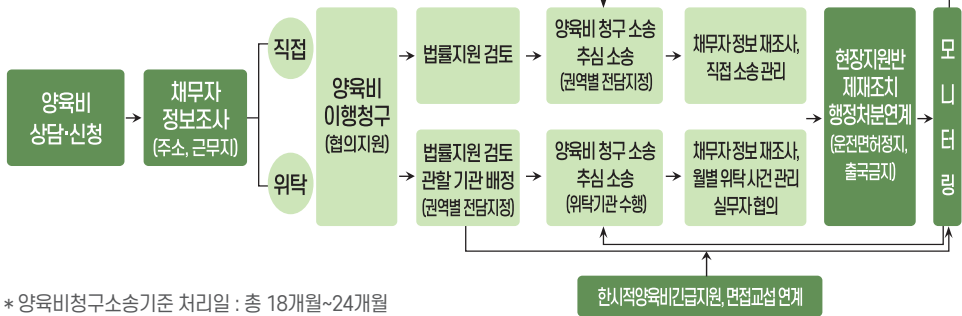
-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확인 등 절차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하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양육 여부 등 확인 후 지급하며, 유전자검사 결과는 사후에 보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36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게 나이에 따라 월 28~54만 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어린이집 보육료)
 -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 지급
 -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아동수당) 0~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영아수당))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지원
 - *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중 택1

2. 건강보험

-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가능
 - (취득대상)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제1항에 의해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미혼부 자녀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최초에는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후 재신고 시에는 방문, 전화 등 가능
 - ※ 미혼부 본인신청(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 (제출서류) 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직장가입자), ②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소장 사본) 및 유전자검사결과 또는 출생증명서(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발급하는 서류)
 - ※ 소장사본과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하면 취득 가능하도록 간소화(23. 5월)
 -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절차도 >



* 양육비청구소송기준 처리일 : 총 18개월~24개월
* 모니터링기간 : 신청 자녀 19세까지 매월 양육비 채권관리

- (상담신청) 온·오프라인 양육비 관련 전문상담 및 신청서비스 제공
- (정보조사) 행망을 통해 정보를 조회하거나 공문으로 정보보유기관에 요청
 - 접수단계 : 모든 접수건 대상 비양육자,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조사 실시
 - 사건진행 : 채무자 동의를 소득재산조사 실시(한시적 예외)
- (협의지원)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에 관한 협의·중재 지원
- (법률지원) 채권이 없는 양육자를 위한 인지·양육비심판청구 소송으로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 (미혼) 인지소송, (이혼) 양육비심판청구소송
- (추심소송) 채무자가 양육비이행의무 위반시 채권자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반 추심소송 지원*
 - * 양육비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경매 및 강제집행, 감치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 (제재조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현장지원반 : 경찰서 협조공문요청, 현장조사, 현장지원을 통한 감치 집행
 - 행정 제재조치 : 감치결정 후 미이행시 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 접수 → 사전통지서 발송(의견수렴) → 공식송달(의견수렴) → 명단 송부
- (모니터링) 자녀가 성년(19세)에 도달할 때까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미이행 시 재추심 연계
-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위기 한부모 대상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1인당 월 20만 원, 최장 12개월)
- (면접교섭)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중재,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문의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ARS 1번 연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관련 용어를 알아보아요

1. 양육부·모 :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
(= 채권자 :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
2. 비양육부·모 :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고 있는 자
(= 채무자 : 양육비 채무에 대한 지급 의무를 갖고 있는 자)
3. 집행권원 : 집행력이 있는 공정의 문서로서 판결문, 심판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공정증서 등
4. 양육비심판청구소송 : 당사자 간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
5. 인지청구소송 : 미혼(비혼)등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 사이에 법률상 부자 또는 모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률상 친자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법률지원

1. 양육비에 관한 법률지원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소송을 지원
-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으로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로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집행권원이 확보된 이후에만 채무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

2. 지원 내용

-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
- 기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라도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 청구를 지원
-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여타의 소송도 함께 지원 가능
 - 양육비 청구에 수반하여 친권자, 양육자의 지정·변경 청구 지원
 - 비혼 한부모가 양육자인 경우 인지 청구 지원, 인지로 자녀의 성·본이 변경되는 경우 성본계속사용허가 청구 지원
 - 조부모 등이 양육자인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지원
- 소송 전후 어느 때라도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합의를 통한 해결을 지원

3. 지원 절차

- ① 양육부·모가 법률지원 신청(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 증액을 요청)
- ② 변호사 상담과 기초사실조사 및 승소 가능성 판단
- ③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
- ④ 양육비 지급 여부 모니터링 후 미지급시 추심 지원으로 연계

4. 필요 서류

-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2-40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신청문의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ARS 1번 연결)

제재조치

- 지원대상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지원내용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처분 신청 지원
- 지원요건 2021.6.10.(운전면허 정지), 2021.7.13.(출국금지) 이후 감치결정
- 신청문의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ARS 1번 연결)

추심지원

1. 양육비에 관한 추심지원

- 집행권원의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추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지원

2. 추심지원의 내용

-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
 - 채무자의 예금, 급여 등 채권과 재산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한 채무자 재산 조사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한 채무자 신용도 하락 유도
- 가사소송법에 의한 이행확보소송
-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여타의 소송도 함께 지원 가능
 - 직접지급명령을 통한 채무자 고용주로부터의 직접 지급
 - 이행명령, 감치를 통한 간접강제(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이행하도록 유도)
 - 담보제공명령을 통한 담보 확보 및 담보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이행법에 의한 제재 조치로 연계
 - 감치결정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로 연계

3. 지원 절차

- ① 양육부·모가 추심지원 신청
- ②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서 발송
- ③ 채무자의 지급 의사 및 소득과 재산 등 지급 능력 확인
- ④ 추심을 위한 이행확보소송, 강제집행 등을 진행
- ⑤ 감치결정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경우 제재조치로 연계

4. 필요 서류

-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2-40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신청문의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ARS 1번 연결)

상담지원

- 지원방법 전화(☎1644-6621), 방문, 온라인을 통하여 양육비로 인한 어려움 및 신청 상담등을 진행하고 있음
- 신청문의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ARS 1번 연결)

모니터링

- **지원방법** 양육비 합의·소송 등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여부 및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
- **신청문의**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ARS 1번 연결)

면접교섭

- **지원대상**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미성년자녀를 둔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
- **지원내용** 면접교섭 관련 중재, 상담,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중재 : 면접교섭 방법·시간·자녀 인도방법 등에 관한 중재, 합의 지원
 - 상담 : 양육자, 비양육자, 자녀 등 서비스 대상자 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 모니터링 :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후 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독려 등
- **신청방법**
 - 1)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자료실 내 <면접교섭서비스 신청서> 작성
 - 2) 구비서류 발급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1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면접교섭 관련 합의내용 또는 집행권원 1부(자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 등)
 - ※ 단, 면접교섭 관련 합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집행권원 등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은 생략 가능
 -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신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24층 이행촉진부(면접교섭)
 - 전자우편: beanointed@kih.f.or.kr
- **신청문의**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ARS 1번 연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지원대상**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자격요건**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총 9개월 동안 지원(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우편 접수
※ 상담 및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 **제출서류**
 -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
 -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 **신청문의**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ARS 1번 연결)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전화상담

한부모(미혼모·부) 상담전화

☎1644-6621

가족센터

☎1577-9337

(위치기반 가까운 가족센터 연결)



온라인상담

여성가족부 누리집 이용

www.mogef.go.kr

※ 본 안내서의 내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도
확인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